

#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0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, 지원 거부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 유도사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어의 정비 (안 제2조)
- 나.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 추가 (안 제7조)
- 다. ‘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’의 설치·운영 근거조항 신설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
-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관련 조항에 성별, 연령, 장애여부·유형, 거주형태 등에 대해 명시 제안

구분	해당 내용 (제·개정 법령안)	개선안 (법령 수정안)
1	제5조(실태조사) ①~②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제5조(실태조사) ①~②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<u>성별, 연령, 장애여부·유형, 거주형태를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하며, 그 밖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
2	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1.~11.(생략) 12.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 13.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~③(생략)	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1.~11.(생략) 12.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 13.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<u>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, 연령, 장애여부·유형, 거주형태 등 시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&lt;신설&gt;</u> ③~④(생략)<기존 ②, ③>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 : 해당없음

### 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3. 8. 17. ~ 9. 6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김재희(☎2133-7391)

##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홀로 사는”을 “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”으로, “혼자 임종”을 “임종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실태조사의”를 “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, 나이, 장애여부·유형, 거주형태를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하며, 그 밖의 실시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12. 개입거부 가구(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)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, 나이, 장애여부·유형, 거주형태 등 시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)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,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(실태조사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사회</u> <u>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</u> ---- ---- <u>임종</u>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실태조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, 나이, 장애여부·유형, 거주형태를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하며, 그 밖의 실시</u> ----.</p> <p>제7조(예방 및 지원사업) ① 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개입거부 가구(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)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</u></p>

12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<신설>

제8조·제9조 (생략)

13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, 나이, 장애여부, 유형, 거주형태 등 시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④ 제3항-----  
-----  
-----  
--.

제8조(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)

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·제10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

#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동 개정안은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2항

### 제14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동 개정안은 별도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

## 4. 작성자

부서명 :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김재희 주무관(2133-7391)